

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

사 건 2023회합100044 회생
채 무 자 국일제지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이용호, 김종철

채무자 회사는 2023. 4. 13. 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공동관리인 이용호, 김종철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회생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인 보고서의 요지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 위 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회생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관리인보고서 1부
2. 시부인표 1부
3. 조사보고서(요약) 1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채무자 국일제지 주식회사(02-6900-552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다)

사건 2023회합100044 회생

관 리 인 보 고 서

2023년 6월 9일

채무자 국일제지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이용호



공동관리인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4월 13일 서울회생법법원 제14부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국일제지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이용호, 김종철 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관리인으로 선임된 저는 공적인 수탁자임을 명심하여 회사와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아래에서 채무자회사가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발생 여부, 목록 및 신고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에 대한 시·부인 결과, 기타 회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주요 사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영업적자 발생 및 지속(아산공장 화재, 원가상승)

채무자는 2020년 말 아산공장의 화재로 인해 2개월 동안 생산가동이 중지되며 2021년에 영업적자로 전환되었고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펄프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상승, 물류대란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그리고 전력과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생산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한 반면, 업계간 경쟁으로 인하여 판매단가는 크게 오르지 못한 결과로, 2022년 대규모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2) 신규사업인 그래핀 사업의 부진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중

채무자 회사는 제지업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을 확장하고자 2018년말 신규사업인 그래핀 개발 및 판매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100%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을 설립하였고 9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현재까지 상용화될만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의 결과를 얻지 못한 바, 채무자의 유동성 악화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3)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원금 상환 요구

채무자 회사는 2021년 11월 30일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 투자조합 외 2인을 인수인으로 하여 105억원 규모의 제 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2022년 4월 29일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외 8인을 인수인으로 하여 100억원 규모의 제 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각각의 만기일은 2024년 11월 30일과 2027년 4월 29일입니다.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은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채무자 회사의 최대주주인 전 대표이사 최우식은 2023년 3월 8일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 보유주식 31,885,000주를 (주)디케이원에 매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자 회사는 각 전환사채 인수인들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원금상환을 요구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상기의 (1)과 (2)의 원인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기한이익이 상실된 전환사채를 상환할 수 없어

2023년 3월 13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23년 4월 1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채무자회사의 1978년 설립된 회사로서 특수지, 산업용지의 제조 및 판매 등 제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 및 용인공장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563 (천리, 국일제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 채무자 회사의 재산 상태는 조사기준일 2023년 4월 13일 현재 자산총계는 128,104,810천원, 부채총계는 95,954,637천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32,150,173천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68,814,237천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청산가치 평가액은 78,940,055천원임에 따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10,125,818천원 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채무자는 아산공장을 매각한다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회생절차를 유지한다면 공장매각대금을 활용하여 회생채권 등에 대한 전액변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3. 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조사 확정 재판 발생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은 ① 아산공장 화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업악화 ② 신규사업인 그래핀 개발, 생산의 부진에 따른 투자금 손실에도 기인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③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원금 상환요구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지배주주는 사채권자 사전 동의없이 최대주주변동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채무자는 유동성 부족이 가중된 상태에서 전환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지배주주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자 회사의 일부 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임원들이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고발조치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라 추후 채무자 회사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 존부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목록에 기재 되었거나 신고 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시·부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4일 채권 신고 기한까지 신고 되었거나 목록에 기재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생담보권은 3건으로 33,521,970,409원이며, 이 중 시인액은 33,259,470,780 원이고, 부인액은 262,499,629원입니다.

나. 회생담보권 중 회생채권 시인액은 없습니다.

다. 회생채권은 116건으로 65,524,069,917원이며, 이 중 시인액은 50,282,650,779 원이고, 부인액은 15,241,419,138원입니다.

라. 시·부인 대상은 아니나, 벌금·조세 등 채권은 3건으로 209,817,540원이며, 주식·출자지분은 12,761,747,3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시·부인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채무자회사의 회생을 위한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산정

조사기준일 현재의 채무자 재산을 청산가치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재산상태조사액	청산조정	청산가치
1. 유동자산	41,024,095	(14,359,760)	26,664,335
현금및현금성자산	4,453,166	-	4,453,166
매출채권	11,504,155	(2,232,016)	9,272,139
미수금	2,055,549	(343,790)	1,711,759
선금금	88,638	(72,376)	16,262
선금비용	82,717	(82,717)	-
부가세대금금	210,988	-	210,988
당기법인세자산	5,622	-	5,622
재고자산	22,623,260	(11,628,861)	10,994,399
2. 비유동자산	87,080,715	(34,804,995)	52,275,720
장기금융상품	32,322	(4,518)	27,804
매도가능증권	689,325	(343,463)	345,862
관계기업투자주식	8,360,554	(5,852,388)	2,508,166
유형자산	73,510,194	(28,116,026)	45,394,168
무형자산	165,159	(56,284)	108,875
기타비유동자산	4,323,161	(432,316)	3,890,845
자산총계	128,104,810	(49,164,755)	78,940,055

나.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산정

(1)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68,814,237천원으로,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A)	22,436,497
추정기간 이후의 현재가치 (B)	14,273,244
비영업자산의 가치 (C)	32,104,497
계속기업의 가치(D=A+B+C)	68,814,237

적용된 할인율은 조사기준일인 2023년 4월 13일 현재의 국고채금리 3.20%에 위험프리미엄 6.50%를 가산하여 9.70%를 적용하였습니다.

(2)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

채무자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경우의 계속기업가치는 68,814,237천원, 청산할 때의 가치는 78,940,055천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0,125,818천원만큼 초과합니다.

(단위 : 천원)

계속기업가치(a)	청산가치(b)	초과(미달)금액((a)-(b))
68,814,237	78,940,055	-10,125,818

존경하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

지금까지 회사를 성원하시고, 후의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영업의 활성화, 경영의 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인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채무 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회생을 위해 지도 편달해 주실 것과 깊은 이해와 크신 아량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9일

채무자 국일제지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이용호, 김종철

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주식 지분권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총괄표

채무자 : 국일제거 주식회사

(단위 : 원)

구분	건수	신고액· 목록기재액	시 인 액	부인액	의결권 인정액	회생담보권 중 회생채권 시인액	비고
회생담보권자	3	33,521,970,409	33,259,470,780	262,499,629	33,259,470,780	-	
회생채권자	회생채권	65,524,069,917	50,282,650,779	15,241,419,138	30,893,471,542		의결권부인액: 1. 서울보증보험: 19,389,179,237원
	회생담보권 중 회생채권 시인액	-	-	-	-		
	소 계	65,524,069,917	50,282,650,779	15,241,419,138	30,893,471,542		
합 계	119	99,046,040,326	83,542,121,559	15,503,918,767	64,152,942,322		
별급·조세채권자	3	209,817,540					시부인대상 아님
주식 출자지분	29	127,617,473 주 12,761,747,300 원					시부인대상 아님, 1주당 100원

조사위원의 의견요약

1. 조사의 개요

본 조사는 국일제지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라 함)의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른 원인과 재산상태, 채무자의 경제성(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 및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3년 4월 13일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개요

채무자는 1978년 설립된 회사로서 특수지, 산업용지의 제조 및 판매 등 제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 및 용인공장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563 (천리, 국일제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대표이사 최우식으로 지분율은 5.69%이며, 이 외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94.31%로 구성됩니다. 채무자는 2004년 10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나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유로 거래정지된 상태로, 채무자는 2023년 3월 13일 회생절차 개시신청하여 2023년 4월 13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적자 발생 및 지속(아산공장 화재, 원가상승)

채무자는 2020년 말 아산공장의 화재로 인해 2개월 동안 생산가동이 중지되며 2021년에 영업적자로 전환되었고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펄프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상승, 물류대란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그리고 전력과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생산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한 반면, 업계간 경쟁으로 인하여 판매단가는 크게 오르지 못한 결과로, 2022년 대규모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2) 신규사업인 그래핀 사업의 부진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중

채무자 회사는 제지업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을 확장하고자 2018 년말 신규사업인 그래핀 개발 및 판매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100% 자회사인 국일그래핀을 설립하였고 90 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현재까지 상용화될만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의 결과를 얻지 못한 바, 채무자의 유동성 악화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3)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원금 상환 요구

채무자 회사는 2021년 11월 30일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외 2인을 인수인으로 하여 105 억원 규모의 제 7 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2022년 4월 29일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외 8 인을 인수인으로 하여 100 억원 규모의 제 8 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각각의 만기일은 2024년 11월 30일과 2027년 4월 29일입니다.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은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채무자 회사의 최대주주인 전 대표이사 최우식은 2023년 3월 8일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 보유주식 31,885,000 주를 (주)디케이원에 매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자 회사는 각 전환사채 인수인들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원금상환을 요구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상기의 (1)과 (2)의 원인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기한이익이 상실된 전환사채를 상환할 수 없어 2023년 3월 13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23년 4월 1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4. 법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은 ① 아산공장 화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업악화 ② 신규사업인 그래핀 개발, 생산의 부진에 따른 투자금 손실에도 기인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③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원금 상환요구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지배주주는 사채권자 사전 동의없이 최대주주변동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채무자는 유동성 부족이 가중된 상태에서 전환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지배주주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자 회사의 일부 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임원들이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고발조치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추후 채무자 회사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 존부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가 제시한 조사기준일 현재의 재산상태와 본 조사위원이 자산, 부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수정한 후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채무자 제시금액	실사조정	재산상태 조사액
1. 유동자산	42,616,702	(1,592,607)	41,024,095
현금및현금성자산	4,453,166	-	4,453,166
파생상품금융자산	727,280	(727,280)	-
매출채권	11,472,653	31,502	11,504,155
미수금	2,055,549	-	2,055,549
선급금	88,698	(60)	88,638
선급비용	93,579	(10,862)	82,717
부가세대급금	210,988	-	210,988
당기법인세자산	5,622	-	5,622
재고자산	23,509,167	(885,907)	22,623,260
2. 비유동자산	82,215,647	4,865,068	87,080,715
장기금융상품	32,322	-	32,322
매도가능증권	1,341,577	(652,252)	689,325
관계기업투자주식	8,360,554	-	8,360,554
유형자산	67,372,690	6,137,504	73,510,194
무형자산	152,970	12,189	165,159
사용권자산	342,108	(342,108)	-
기타비유동자산	4,613,426	(290,265)	4,323,161
자산총계	124,832,349	3,272,461	128,104,810
회생담보권	33,259,471	(520,000)	32,739,471
한국산업은행	19,682,920	-	19,682,920
(주)하나은행	7,755,674	-	7,755,674
(주)신한은행	5,820,877	(520,000)	5,300,877
회생채권	50,492,469	1,062,383	51,554,852
대여금채권	2,397,631	-	2,397,631
상거래채권	5,334,985	-	5,334,985
전환사채권	23,160,856	-	23,160,856
특수관계인채권(임원급여채권)	-	1,062,383	1,062,383
미발생구상채권	19,389,179	-	19,389,179
조세 등 채권	209,818	-	209,818
공익채권	11,660,314	-	11,660,314
미지급급여	1,281,576	-	1,281,576
미지급퇴직급여 등	6,402,856	-	6,402,856
상거래채권	3,975,883	-	3,975,883
부채총계	95,412,254	542,383	95,954,637
자본총계	29,420,095	2,730,078	32,150,173
부채와 자본총계	124,832,349	3,272,461	128,104,810

6. 우발채무(보증채무)의 내역

(1) 미확정보증채무

채무자가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2) 미발생구상채무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증제공자	보증제공처	보증내역	보증금액	비고
서울보증보험	충청남도 아산시	인허가	16,901	
	충청남도 아산시	인허가	6,260	
	무림페이퍼(주)	매출채권	50,000	
	무림에스피(주)	매출채권	150,000	
	에이제이네트웍스(주)	지급	2,000	
	(주)농협사료	계약	144,948	
	제이비(주)	지급	260,000	
	(주)농협사료	입찰	429,271	
	도레이첨단소재(주)	매출채권	44,000	
	금강유역환경청	인허가	126,000	
	금강유역환경청	인허가	1,440,000	
	금강유역환경청	인허가	1,800,000	
	(주)농협사료	입찰	443,157	
	(주)농협사료	계약	134,804	
	금강유역환경청	인허가	3,600,000	
	금강유역환경청	인허가	2,160,000	
	주식회사 케이티	지급	255,200	
	금강유역환경청	인허가	1,080,000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	487,072	
	(주)농협사료	계약	115,249	
	(주)농협사료	입찰	414,279	
	한국환경공단	지급	612,822	
	(주)농협사료	입찰	354,202	
	주식회사 케이티	지급	894,740	
	용인세무서	납세	922,174	
	용인세무서	납세	447,104	
	(주)농협사료	입찰	705,804	
	(주)농협아그로	계약	4,500	

보증제공자	보증제공처	보증내역	보증금액	비고
	한국에너지공단	지급	55,000	
	㈜농협사료	계약	110,541	
	㈜농협사료	입찰	326,000	
	캡코이에스㈜	지급	713,623	
	㈜농협아그로	입찰	23,000	
	SK 텔레콤㈜	지급	198,000	
	㈜농협아그로	계약	8,000	
	㈜농협사료	계약	98,226	
	㈜농협사료	입찰	340,903	
	미그린산업 주식회사	공탁	42,000	
	주식회사 미코	공탁	5,400	
	컨버즈㈜	아산시	368,000	
	합 계		19,389,180	

(3) 진행중인 소송현황

조사기준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4) 진행중인 조사확정재판

조사기준일 현재 진행중인 조사확정재판은 없습니다.

7. 부채 차이내역(시부인표와 부채 조사액 차이내역)

조사기준일 현재 시부인표와 부채 조사액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채무자제시금액	비고
시부인표상 부채금액	83,751,939	
(-) 부인권대상 회생담보권	(520,000)	(*1)
(+) 특수관계인채권(임원급여채권)	1,062,383	최우식외 5인
(+) 공익채권(미지급급여)	1,281,576	(*2)
(+) 공익채권(미지급퇴직급여)	6,402,856	(*3)
(+) 공익채권(상거래채권)	3,975,883	(*4)
재산상태 조사액 (부채 조사액)	95,954,637	

(*1) ㈜신한은행에 2023년 3월 7일 관계사인 진영지업㈜로부터 수령한 받아들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 부인 대상입니다. 진영지업㈜가 변제함에 따라 향후 소멸처리 예정입니다.

(*2) 명절 급여, 상여, 임원급여, 연차수당 및 예수금(소득세 미납액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절 급여, 상여는 171,319천원, 임원급여 31,681천원, 연차수당 740,652 및 예수금(소득세 미납액 등) 337,924천원입니다.

(*3) 공익채권(미지급퇴직급여)은 직원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액입니다. 직원퇴직금은 1,029,996천원, 퇴직급여충당금은 5,372,860천원입니다.

(*4) 공익채권(상거래채권)은 한국전력공사 외 221개 업체에 대한 매입채무, 미지급금입니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토 항목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0 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가. 법규정

제1항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을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을 후 또는 그 전 60 일 이내에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을 후 또는 그 이전 6 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 2 항 제 1 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 140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장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본 조의 해당여부

위 사항에 대하여 부인권 대상행위로 판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주)신한은행에 2023 년 3 월 7 일 관계사인 진영지업(주)로부터 수령한 받을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을 후 또는 그 전 60 일 이내에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 부인 대상입니다. (주)신한은행은 2023 년 5 월 11 일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채무자는 부인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인하였습니다.

시인된 (주)신한은행의 회생담보권은 부인권 행사를 통해 부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해당 어음발행인인 진영지업(주)에서 2023 년 5 월 31 일 (주)신한은행에 정상적으로 어음만기 결제함으로써 상환되어 채무자가 향후 소멸처리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1 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가. 법규정

제 1 항 제 100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은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 2 항 제 100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60 일을 1 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 3 항 제 100 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 월을 1 년으로 한다.

나. 본 조의 해당여부

위 사항에 대하여 발견된 바 없습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2 조 (어음채무지급의 예외)

가. 법규정

제 1 항 제 100 조 제 1 항의 규정은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1 인 또는 여러 명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항 제 1 항의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관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나. 본 조의 해당여부

위 사항에 대하여 발견된 바 없습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3 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가. 법규정

제 1 항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을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을 제 3 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을 날부터 15 일 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에 가등기 또는 가등락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락을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항 제 1 항의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나. 본 조의 해당여부

위 사항에 대하여 발견된 바 없습니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4 조 (집행행위의 부인)

가. 법규정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을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나. 본 조의 해당여부

위 사항에 대하여 발견된 바 없습니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05 조 제 4 항 (무상소각 사유의 해당여부)

가. 법규정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 하거나 3 주 이상을 1 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본 조의 해당여부

채무자 회사의 지배주주는 사채권자 사전 동의없이 최대주주변동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채무자는 유동성 부족이 가중된 상태에서 전환사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지배주주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유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거나 3 주 이상을 1 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46 조 제 3 항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가. 법규정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나. 본 조의 해당여부

회사는 조사기준일 현재 자산총액이 128,104,810 천원, 부채총액이 95,954,637 천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32,150,173 천원 만큼 초과하여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재산상태조사액

(단위: 천원)

계정과목	채무자 제시금액	실사조정	재산상태 조사액
유동자산	42,616,702	(1,592,607)	41,024,095
비유동자산	82,215,647	4,865,068	87,080,715
자산총계	124,832,349	3,272,461	128,104,810
부채총계	95,412,254	542,383	95,954,637
자본총계	29,420,095	2,730,078	32,150,173
부채와 자본총계	124,832,349	3,272,461	128,104,810

9.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산정

청산가치는 도산한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에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기업의 모든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예상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사위원이 채무자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채무자가 제시한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액을 실물조사, 현재가치할인, 부실자산의 차감, 고정자산의 시가 등을 통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재산상태조사액	청산조정	청산가치
1. 유동자산	41,024,095	(14,359,760)	26,664,335
현금및현금성자산	4,453,166	-	4,453,166
매출채권	11,504,155	(2,232,016)	9,272,139
미수금	2,055,549	(343,790)	1,711,759
선급금	88,638	(72,376)	16,262
선급비용	82,717	(82,717)	-
부가세대급금	210,988	-	210,988
당기법인세자산	5,622	-	5,622
재고자산	22,623,260	(11,628,861)	10,994,399
2. 비유동자산	87,080,715	(34,804,995)	52,275,720
장기금융상품	32,322	(4,518)	27,804
매도가능증권	689,325	(343,463)	345,862
관계기업투자주식	8,360,554	(5,852,388)	2,508,166
유형자산	73,510,194	(28,116,026)	45,394,168
무형자산	165,159	(56,284)	108,875
기타비유동자산	4,323,161	(432,316)	3,890,845
자산총계	128,104,810	(49,164,755)	78,940,055

10.채무자의 사업의 수익성 분석 및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산정

(1) 계속기업가치 산정요약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준비연도(2023년 4월 13일 ~ 12월 31일)와 채무자의 향후 10년간(2024년~2033년) 미래수익흐름과 성장모형을 이용한 회생기간 이후의 현금흐름 추정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인율은 회생절차 개시일인 2023년 4월 13일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3.20%에 위험프리미엄 6.5%를 적용한 9.70%를 적용하였으며, 회생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에 대한 고정성장률은 0.0%를 가정하였습니다. 위험프리미엄은 현재 영업상황 및 영업레버리지를 고려하여 위험프리미엄 최대치인 6.5%로 가정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19년에 아산공장을 인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용인공장(특수지)과 아산공장(산업용지)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은 아산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2024년부터는 용인공장만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기 절차 및 가정에 따라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하였는 바,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A)	22,436,497
추정기간 이후의 현재가치 (B)	14,273,244
비영업자산의 가치 (C)	32,104,497
계속기업의 가치(D=A+B+C)	68,814,237

(2) 추정손익계산서

준비연도인 2023년 4월 13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의 채무자의 추정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준비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I.매출액	76,728,323	57,759,153	58,510,022	59,153,633	59,863,476	61,060,746
(매출액성장률)	-9.99%	-24.72%	1.30%	1.10%	1.20%	2.00%
II.매출원가	75,510,452	53,614,153	53,750,051	53,853,123	54,015,138	54,554,958
(매출원가율)	98.41%	92.82%	91.86%	91.04%	90.23%	89.35%
III.매출총이익	1,217,871	4,145,000	4,759,971	5,300,509	5,848,338	6,505,788
(매출총이익율)	1.59%	7.18%	8.14%	8.96%	9.77%	10.65%
IV.판매비와관리비	5,433,946	2,698,718	2,742,722	2,805,028	2,870,273	2,947,108

구분	준비연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2028 년
(판관비용)	7.08%	4.67%	4.69%	4.74%	4.79%	4.83%
V.영업이익(손실)	(4,216,075)	1,446,282	2,017,249	2,495,482	2,978,065	3,558,680
(영업이익율)	-5.49%	2.50%	3.45%	4.22%	4.97%	5.83%

구분	2029 년	2030 년	2031 년	2032 년	2033 년	합계
I.매출액	62,281,961	63,527,600	64,861,679	66,223,775	67,614,474	697,584,841
(매출액성장율)	2.00%	2.00%	2.10%	2.10%	2.10%	
II.매출원가	55,646,580	56,772,667	57,981,390	59,225,977	60,506,374	635,430,864
(매출원가율)	89.35%	89.37%	89.39%	89.43%	89.49%	
III.매출총이익	6,635,380	6,754,933	6,880,289	6,997,797	7,108,100	62,153,978
(매출총이익율)	10.65%	10.63%	10.61%	10.57%	10.51%	
IV.판매비와관리비	3,026,363	3,107,720	3,192,686	3,279,929	3,369,934	35,474,426
(판관비용)	4.86%	4.89%	4.92%	4.95%	4.98%	
V.영업이익(손실)	3,609,017	3,647,213	3,687,603	3,717,868	3,738,166	26,679,551
(영업이익율)	5.79%	5.74%	5.69%	5.61%	5.53%	

(3) 추정 순영업 현금흐름

채무자의 향후 순영업현금흐름은 준비연도(2023년 4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와 회생기간인 2024년부터 2033년까지의 10년간 추정된 손익을 바탕으로 2033년까지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준비연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2028 년
세전영업이익	(4,216,075)	1,446,282	2,017,249	2,495,482	2,978,065	3,558,680
(-)법인세비용	-	-	-	-	(387,214)	(793,941)
(-)CAPEX	(1,431,509)	(1,057,996)	(938,577)	(832,883)	(739,319)	(656,477)
(+)감가상각비	1,441,320	1,057,996	938,577	832,883	739,319	656,477
(+)순운전자본의 증감	9,715,106	5,142,840	(162,722)	(116,454)	(136,946)	(252,418)
영업현금흐름액	5,508,842	6,589,122	1,854,527	2,379,028	2,453,905	2,512,322

구분	2029 년	2030 년	2031 년	2032 년	2033 년	합계
세전영업이익	3,609,017	3,647,213	3,687,603	3,717,868	3,738,166	26,679,551
(-)법인세비용	(805,513)	(814,294)	(823,580)	(830,538)	(835,204)	(5,290,284)
(-)CAPEX	(583,114)	(518,130)	(460,557)	(409,537)	(364,312)	(7,992,413)
(+)감가상각비	583,114	518,130	460,557	409,537	364,312	8,002,223
(+)순운전자본의 증감	(404,171)	(388,484)	(416,539)	(399,493)	(465,442)	12,115,278
영업현금흐름액	2,399,333	2,444,435	2,447,484	2,487,838	2,437,520	33,514,357

11. 채무변제계획(안)

(1) 변제대상 채무내역

조사기준일 2023년 4월 13일 현재 채무자의 조사 후 변제대상 채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채권구분		금액
회생담보권	한국산업은행	19,682,920
	㈜하나은행	7,755,674
	㈜신한은행	5,300,877
	소계	32,739,471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2,397,631
	상거래채권	5,334,985
	전환사채권	23,160,856
	특수관계인채권(임원급여채권)	1,062,383
	미발생구상채권	19,389,179
	조세 등 채권	209,818
	소계	51,554,851
합계		84,294,322

(*)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 95,954,637 천원과 변제대상 채무 84,294,322 천원과의 차이는 미지급금여 등 11,660,315 천원과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2) 채무변제계획(안) 요약

구분	분류	변제조건
회생담보권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변제하되, 제 1 차연도(2024년)에 전액 변제한다.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미변제채권 잔액에 대하여 연 6% 를 지급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00%를 변제하되, 제 1 차연도(2024년)부터 제 9 차연도(2032년)까지 11.11%씩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는 미변제채권 잔액에 대하여 연 6% 를 지급한다.
	개시후이자	

구분	분류	변제조건
회생채권 (전환사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_임원급여채 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	미정
	개시후이자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제 1 차연도(2024 년)에 전액 변제한다.
	개시후이자	

(3) 추정 자금수지표

채무자의 채무변제계획(안)에 따른 향후 10 년간의 추정자금수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준비연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2028 년
1. 전기이월액	4,453,166	9,962,009	17,797,206	14,396,771	11,733,875	9,358,895
2. 영업현금흐름						
세후영업이익	(4,216,075)	1,446,282	2,017,249	2,495,482	2,590,852	2,764,739
(+/-) 감가상각비	1,441,320	1,057,996	938,577	832,883	739,319	656,477
(+/-) CAPEX	(1,431,509)	(1,057,996)	(938,577)	(832,883)	(739,319)	(656,477)
(+/-) 순운전자본 증감	9,715,106	5,142,840	(162,722)	(116,454)	(136,946)	(252,418)
3. 자산의 매각						
(+/-) 비영업자산의 매각	-	56,074,377	-	-	-	-
자금의 원천 계	9,962,009	72,625,508	19,651,733	16,775,798	14,187,780	11,871,217
1. 회생담보권	-	36,113,879	-	-	-	-
한국산업은행	-	21,711,609	-	-	-	-
㈜하나은행	-	8,555,040	-	-	-	-
㈜신한은행	-	5,847,230	-	-	-	-
2. 회생채권	-	7,054,110	5,254,963	5,041,924	4,828,885	4,615,846
대여금채권	-	513,524	394,277	378,293	362,309	346,325
상거래채권	-	1,142,645	877,309	841,742	806,175	770,609

구분	준비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전환사채권	-	4,960,583	3,808,674	3,654,268	3,499,863	3,345,457
특수관계인채권(임원 급여채권)	-	227,541	174,703	167,620	160,538	153,455
미발생구상채권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조세 등 채권	-	209,818	-	-	-	-
3. 공익채권	-	11,660,314	-	-	-	-
미지급급여	-	1,281,576	-	-	-	-
미지급퇴직급여 등	-	6,402,856	-	-	-	-
상거래채권	-	3,975,883	-	-	-	-
자금의 운용 계	-	54,828,303	5,254,963	5,041,924	4,828,885	4,615,846
차기자금이월액	9,962,009	17,797,206	14,396,771	11,733,875	9,358,895	7,255,372

구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합계
1. 전기이월액	7,255,372	5,251,898	4,145,683	3,042,516	1,979,703	4,453,166
2. 영업현금흐름						
세후영업이익	2,803,504	2,832,919	2,864,023	2,887,330	2,902,962	21,389,268
(+/-) 감가상각비	583,114	518,130	460,557	409,537	364,312	8,002,223
(+/-) CAPEX	(583,114)	(518,130)	(460,557)	(409,537)	(364,312)	(7,992,413)
(+/-) 순운전자본증감	(404,171)	(388,484)	(416,539)	(399,493)	(465,442)	12,115,278
3. 자산의 매각 (±)비영업자산의 매각 ^{*)}	-	-	-	-	-	56,074,377
자금의 원천 계	9,654,705	7,696,333	6,593,167	5,530,354	4,417,223	94,041,901
1. 회생담보권	-	-	-	-	-	36,113,879
한국산업은행	-	-	-	-	-	21,711,609
(주)하나은행	-	-	-	-	-	8,555,040
(주)신한은행	-	-	-	-	-	5,847,230
2. 회생채권	4,402,807	3,550,650	3,550,650	3,550,650	-	41,850,485
대여금채권	330,340	266,403	266,403	266,403	-	3,124,278
상거래채권	735,042	592,776	592,776	592,776	-	6,951,850
전환사채권	3,191,051	2,573,428	2,573,428	2,573,428	-	30,180,181
특수관계인채권(임원 급여채권)	146,373	118,043	118,043	118,043	-	1,384,358
미발생구상채권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조세 등 채권	-	-	-	-	-	209,818
3. 공익채권	-	-	-	-	-	11,660,314

구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합계
미지급급여	-	-	-	-	-	1,281,576
미지급퇴직급여 등	-	-	-	-	-	6,402,856
상거래채권	-	-	-	-	-	3,975,883
자금의 운용 계	4,402,807	3,550,650	3,550,650	3,550,650	-	89,624,678
차기자금이월액	5,251,898	4,145,683	3,042,516	1,979,703	4,417,223	4,417,223

(*)비영업자산의 매각가는 실사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4) 청산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에 대한 배당률

채무자가 청산된다는 가정하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의 배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채 권 구 분		변제대상금액	배당액 ^(*)	배당률
회생담보권	한국산업은행	19,682,920	19,682,920	100.00%
	㈜하나은행	7,755,674	7,755,674	100.00%
	㈜신한은행	5,300,877	5,300,877	100.00%
소 계		32,739,471	32,739,471	100.00%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2,397,631	2,397,631	100.00%
	상거래채권	5,334,985	5,334,985	100.00%
	전환사채권	23,160,856	23,160,856	100.00%
	특수관계인채권(임원급여채권)	1,062,383	1,062,383	100.00%
	미발생구상채권 ^(*)	19,389,179	미정	미정
	조세 등 채권	209,818	209,818	100.00%
소 계^(*)		51,554,851	32,165,672	100.00%
합 계^(*)		84,294,322	64,905,143	100.00%

(*) 청산가치 78,940,055 천원과 청산배당액 합계 64,905,143 천원의 차이 14,034,912 천원은 청산비용 789,401 천원(청산가치 1%)과 공제후 잔액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 보험증권가입내역 검토 및 담당자 확인 결과 조사기준일 현재 공사 계약이행이 완료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실화될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실화 가능액을 '0'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소계 및 합계의 배당률은 (*)의 미발생구상채권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각 채권자별 청산배당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채권액	담보자산 배당	일반배당	총배당액	공제후 잔액	배당률 (%)
	1)	2)	3)	4) = 2) + 3)	5) = 1)-4)	6)=4)/1)
1. 청산가치		47,510,853	31,429,202	78,940,055	78,940,055	
2. 청산관리비용					789,401	
공익채권						
미지급급여	1,281,576	1,281,576	-	1,281,576	-	100.00%
미지급퇴직급여 등	6,402,856	6,402,856	-	6,402,856	-	100.00%
상거래채권	3,975,883	3,975,883	-	3,975,883	-	100.00%
공익채권 소계	11,660,314	11,660,314	-	11,660,314	66,490,340	100.00%
회생담보권						
한국산업은행	19,682,920	19,682,920	-	19,682,920		100.00%
(주)하나은행	7,755,674	7,755,674	-	7,755,674		100.00%
(주)신한은행	5,300,877	5,300,877	-	5,300,877		100.00%
회생담보권 소계	32,739,471	32,739,471	-	32,739,471		100.00%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2,397,631	217,679	2,179,952	2,397,631		100.00%
상거래채권	5,334,985	484,360	4,850,625	5,334,985		100.00%
전환사채권	23,160,856	2,102,758	21,058,097	23,160,856		100.00%
특수관계인채권(임원급여채권)	1,062,383	96,453	965,930	1,062,383		100.00%
미발생구상채권(*)	19,389,179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조세 등 채권	209,818	209,818	-	209,818		100.00%
회생채권 소계	51,554,851	3,111,068	29,054,604	32,165,672	1,585,200	100.00%
합계 (*)	95,954,636	47,510,853	29,054,604	76,565,457	1,585,200	100.00%

(*) 보험증권가입내역 검토 및 담당자 확인 결과 조사기준일 현재 공사 계약이행이 완료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실화될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실화 가능액을 '0'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소계 및 합계의 배당률 산정시 (*)의 미발생구상채권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5) 계속기업시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율

(단위: 천원)

구분	변제대상금액	변제액	현가변제액	현가변제율 ^(*)
1. 회생담보권	32,739,471	32,739,471	33,053,492	100.96%
한국산업은행	19,682,920	19,682,920	19,871,709	100.96%
㈜하나은행	7,755,674	7,755,674	7,830,063	100.96%
㈜신한은행	5,300,877	5,300,877	5,351,720	100.96%
2. 회생채권	51,554,851	32,165,672	32,327,169	100.50%
대여금채권	2,397,631	2,397,631	2,411,082	100.56%
상거래채권	5,334,985	5,334,985	5,364,915	100.56%
전환사채권	23,160,856	23,160,856	23,290,792	100.56%
특수관계인채권(임원급여채권)	1,062,383	1,062,383	1,068,343	100.56%
미발생구상채권	19,389,179	미정	미정	미정
조세 등 채권	209,818	209,818	192,037	91.53%
합계	84,294,322	64,905,143	65,380,661	100.73%

(*) 변제율 산정시 할인율은 2023년 3월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업대출금리(5.29%)를 적용하였습니다.

(6) 변제율과 배당률비교

회생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경우 회생담보권의 변제율은 100.96%로, 청산시 회생담보권의 배당률인 100.00%보다 높으며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100.50%로, 청산시 회생채권의 배당률인 100.00%보다 높으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청산을 통한 배당보다는 채무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됩니다.

구분	변제율 ^(*)	배당률	차이
1. 회생담보권	100.96%	100.00%	0.96%
한국산업은행	100.96%	100.00%	0.96%
㈜하나은행	100.96%	100.00%	0.96%
㈜신한은행	100.96%	100.00%	0.96%
2. 회생채권	100.50%	100.00%	0.50%
대여금채권	100.56%	100.00%	0.56%
상거래채권	100.56%	100.00%	0.56%
전환사채권	100.56%	100.00%	0.56%
특수관계인채권(임원급여채권)	100.56%	100.00%	0.56%
미발생구상채권 ^(*)	미정	미정	미정
조세 등 채권	91.53%	100.00%	-8.47%
합계	100.73%	100.00%	0.73%

(*) 변제율 산정시 할인율은 2023년 3월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업대출금리(5.29%)를 적용하였습니다.

(*) 소계 및 합계의 배당률 산정시 (*)의 미발생구상채권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12. 회생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조사위원의 의견

전술한 조사결과를 종합한 회생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조사위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기준일 현재의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정후 자산총계는 128,104,810 천원이고 부채총계는 95,954,637 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나 영업적자 등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회생절차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가능성이 없습니다.

채무자는 2019 년에 아산공장을 인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용인공장(특수지)과 아산공장(산업용지)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은 아산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2024 년부터는 용인공장만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본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아산공장을 매각한다는 가정 하에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68,814,237 천원이고 청산가치는 78,940,055 천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0,125,818 천원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사업계획상 아산공장을 매각한다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회생절차를 유지한다면 공장매각대금을 활용하여 회생채권 등에 대한 전액 변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채무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대상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고 회생기간 동안의 추정손익 및 자금수지계획을 검토한 결과 비록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지만 회생절차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의 회생담보권의 변제율은 100.96%로 청산시 회생담보권의 배당률인 100.00%보다 높으며,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100.50%로, 청산시 회생채권의 배당률인 100.00%보다 높으므로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인가전 M&A 를 추진 중이며 다양한 투자자들과 투자유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각초기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추후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인수자의 사업계획 및 운영능력에 따른 시너지 발생으로 채무자 회사의 기업가치가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은 비록 채무자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나,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사 종업원 및 종업원의 가족,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 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유지하여 인가전 M&A 를 성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